

제적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30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3

2012.02.01.제정 2014.02.01.개정 2018.10.24.개정 2019.07.16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판부서 :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대학교 학칙 제31조(제적)에 의한 제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제적은 미등록, 미복학, 징계 등의 사유로 학칙에 의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.

제3조(제적대상) 본교 재적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.

- 1. 휴학기가 종료 후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여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2. 삭제 <2018.10.24.>
- 3. 타교에 입학한 자
- 4.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대학이 정한 등록기한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
- 5.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
- 6.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- 7. 성적불량,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수업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.
- 8. 재학 중 사망한 자(사망확인서 또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2인 이상의 확인서를 첨부)

제4조(제적자의 등록금처리) 제적된 자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 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5.12.24.)에 의하여 『산학·취업처』를 『산학 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제적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30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3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규정 제3조 제2호 삭제에 대한 적용은 2018년 10월 01일 재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『교학처』를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제적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30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3

[별지 제1호 서식] <신설 2019.07.16.>

지도교수	학과장

제적 신청서

제 적 대 상 자

연 번	학과/계열명	성명	학번	학년	반	학적상태	비고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
- 1.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여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함
- 신 2. 타교에 입학함
 - 3.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대학이 정한 등록기한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함
 - . 4.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음
- 사 5.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됨
 - 6. 성적불량,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수업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됨
- 유 7. 재학 중 사망한 자(사망확인서 및 지도교수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싸인이 된 제적신청서 첨부)

А	H	ᆮ	H	ΙL	1	요 .	
싱	;	8	i	ᄓ	1:	_	

제적 규정 제3조(제적대상)에 근거하여 제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신 청 일 자 : 년 월 일 신 청 인 : (인)